

점선 상단은 이미지 전산처리 부분이오니 글씨를 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

일 자 (DATE) : _____
 지 점 명 (BRANCH) : _____
 참조번호 (REF NO) : _____

외화송금/지급신청서

(거래외국환은행지정 (변경) 신청서)

인감대조	실명확인	담당자	책임자

송금인출계좌	송금인출계좌통화: (Currency)	송금인출계좌: (Debit Account)				
송금방법 (Send By)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송금(OTT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간해외송금(OCT) <input type="checkbox"/> 송금수표(ODD)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격지수표(ORD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송금 (<input type="checkbox"/> OMT <input type="checkbox"/> OKT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			
송금액 (Amount)	(US\$) 통화 (Currency)					
송금취결일(Value Date)	*기업고객중 무통장 고객에게만 적용	*고객님께서 직접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.				
신 청 인 (Applicant)	주민/사업자/여권번호					
	한글성명(Korean Name)					
	영문성명(English Name)					
	주소(Address) (Tel :)					
	이메일(e-Mail Address) @					
수 취 인 (Beneficiary)	성명(Name or co.) 신청인과의 관계					
	주소 (Address) (Tel :)					
	국적 (Nationality) 주민등록번호(내국인인경우)					
수 취 인 거 래 은 행 (Beneficiary Bank)	수취인 계좌번호 (Beneficiary A/C No.)					
	은행명 및 지점명 (Bank Name)					
	은행주소(도시, 국가명) (Bank Address)					
	은행코드 (SWIFT BIC, ABA#, Sort Code etc.)					
*시티은행글로벌계좌이체로 미국/인도 송금시 국가명과 주명(지역명) 필수						
국외수수료(Charge)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인 (Applicant)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취인 (Beneficiary) 내역 (Payment Details)					
자금중개은행 (Intermediary Bank)	지급사유(Payment Reason)					
수입대금(미화 2만불 초과)의 경우 기재	사전송금여부	품목(H.S. Code)	가격조건	상대국	L/C or 계약서 No	대응수입예정일
						당초: 변경:
해외여행경비 등의 경우 기재	해외여행경비 : _____ 해외 이주비 : _____					
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■ 귀행을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지급(연간 미화 5만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예외 포함)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. (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후 본 서식 상단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할 것) ■ 본인은 귀행 영업점에 비치된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따를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지급신청 합니다. ■ 귀행이 본인의 해외송금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수취은행이 당해 수취은행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송금인명, 고객식별정보(고객 번호 및 주소 등)의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수취은행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						
					신청인	(인 또는 서명)
					대리인	(인 또는 서명)
이 신청서는 외국환통계자료로 활용하며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.						
위 사실을 확인함		지정 확인 번호	년 월 일		지정 일자	한국씨티은행장 인

지급신고 일자	신고번호	신고금액	
송금액 산식	국외은행수수료		
송금수수료	전신료	수수료합계	
외화대체액	차감원화액		

※ 본 신청서는 대외지급수단의 휴대반출에 따른 근거서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



FX-A-102(송인일 2013. 5) ①

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

본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함에 동의합니다.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.

※ 제공할 금융거래정보 등의 범위

현금, 예금, 신탁, 유가증권, 투자상품,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본인이 하는 금융거래 (외국환 거래 포함)

※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 받을 자

1. 거래정보 처리, 가공 및 저장업무 또는 신용장 통지 등 무역관련 업무를 국내 또는 해외로 위탁함에 따라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본.지점, 자회사 및 계열사 (이

하 "관계회사"라고 함)에게 제공

2. 귀행의 내부 보고, 감사 및 검사를 위하여 해당 관계회사 및 해외 감독기관에게 제공
3. 귀행이 본인에게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제휴를 맺은 자에게 제공

※ 본인은 귀행이 본 동의서에 따라 해외 감독기관 이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한 명의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, 본 동의서는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본 동의 및 약사항을 취소하는 서면을 수령할 때까지 유효함에 동의합니다. 또한 본인은 첨부되어 있는 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고객관리 안내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다.

20

년

월

일

본인 :

(인 또는 서명)

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

귀 행이 금융거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(주민번호)를 수집,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20

년

월

일

대리인 :

(인 또는 서명)

일 자 (DATE) : _____
 지 점 명 (BRANCH) : _____
 참조번호 (REF NO) : _____

외화송금/지급신청서

(거래외국환은행지정 (변경) 신청서)

인감대조	실명확인	담당자	책임자

송금인출계좌	송금인출계좌통화: (Currency)	송금인출계좌: (Debit Account)			
송금방법 (Send By)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송금(OTT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간해외송금(OCT) <input type="checkbox"/> 송금수표(ODD)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격지수표(ORD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송금 (<input type="checkbox"/> OMT <input type="checkbox"/> OKT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		
송금액 (Amount)	(US\$)		통화 (Currency)		
송금취결일(Value Date)	*기업고객중 무통장 고객에게만 적용		구송금번호	*고객님께서 직접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.	
신 청 인 (Applicant)	주민/사업자/여권번호				
	한글성명(Korean Name)				
	영문성명(English Name)				
	주소(Address)		(Tel :)		
	이메일(e-Mail Address)		@		
수 취 인 (Beneficiary)	성명(Name or co.)		신청인과의 관계		
	주소 (Address)		(Tel :)		
	국적 (Nationality)		주민등록번호(내국인인경우)		
수 취 인 거 래 은 행 (Beneficiary Bank)	수취인 계좌번호 (Beneficiary A/C No.)				
	은행명 및 지점명 (Bank Name)				
	은행주소(도시, 국가명) (Bank Address)				
	은행코드 (SWIFT BIC, ABA#, Sort Code etc.)		<small>*씨티은행글로벌계좌이체로 미국/인도 송금시 국가명과 주명(지역명) 필수</small>		
국외수수료(Charge)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인 (Applicant)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취인 (Beneficiary)		내역 (Payment Details)		
자금중개은행 (Intermediary Bank)	지급 사유(Payment Reason)				
수입대금(미화 2만불 초과)의 경우 기재	사전송금여부	품목(H.S. Code)	가격조건	상대국	L/C or 계약서 No
					대응수입예정일
해외여행경비 등의 경우 기재	해외여행경비 :				
	해외이주비 :				
<p>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귀행을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지급(연간 미화 5만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예외 포함)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. (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후 본 서식 상단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할 것) ■ 본인은 귀행 영업점에 비치된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따를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지급신청 합니다. ■ 귀행이 본인의 해외송금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수취은행이 당해 수취은행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송금인명, 고객식별정보(고객번호 및 주소 등)의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수취은행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 또는 서명) 대리인 (인 또는 서명)</p>					
이 신청서는 외국환통계자료로 활용하며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.					
위 사실을 확인함		지 정 확 인 번 호	지 정 일 자		
		년 월 일	한 국 씨 티 은 행 장 인		

지급신고 일자	신고번호	신고금액	
송금액 산식	국외은행수수료		
송금수수료	전신료	수수료합계	
외화대체액	차 감 원 화 액		

※ 본 신청서는 대외지급수단의 휴대반출에 따른 근거서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

외환거래 기본약관

(외화송금, 송금수표 및 원격지수표 관련부분 발췌)

이 외환거래 기본약관(이하 약관이라 합니다)은 한국씨티은행(이하 은행이라 합니다)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,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.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·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1 조 적용범위

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됩니다.

1. 외화송금
2. 송금수표 및 원격지수표
3. 외국통화 매입
4.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
5.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

제 2 조 실명거래

- ① 신청인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, 여권,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3 조 외화송금

- ①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환거래은행(지급은행, 추심은행 등 관련은행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.
- ②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, 부호,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③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지급신청서 사본 등으로 송금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④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 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.
- ⑤ 지급 통화가 수취인 국가의 통화가 아닐 경우, 지급 금액은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시점의 지급은행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수취인 국가 통화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송금수표 및 원격지수표

- ① 신청인의 외화수표 발행 신청에 따라 은행이 신청인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송금수표라고 하고, 신청인이 외화수표의 발행 외에 배송까지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송금수표와 구별하여 원격지수표라 명명합니다.
- ② 원격지수표 발행 신청 시, 은행은 "발행 및 배송 담당 제휴 금융기관"(이하 "제휴 금융기관"이라 한다)에 수표 발행 신청 및 배송 내용을 전달하여 최종 수취인에게 수표가 배송되도록 합니다.

- ② 은행은 제휴 금융기관에 수표발행 통지, 수표발행 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, 부호,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③ 신청인은 수표발행 거래를 마친 때 수표 발행신청서 사본 또는 송금수표 등으로 발행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④ 신청인의 발행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 및 원격지수표의 원본을 반환 받거나 제휴 금융기관에 수표지급정지 요청 후, 제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제휴 금융기관의 수표지급 정지 수수료 등 발행취소에 소요된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.
- ⑤ 송금수표 및 원격지수표의 지급자금이 제휴 금융기관에 제공된 경우 은행은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제휴 금융기관에 송금수표 혹은 원격지수표의 액면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.
- ⑥ (발행 통화가 수취인 국가의 통화가 아닐 경우, 지급 금액은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시점의 지급은행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수취인 국가 통화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수수료, 비용 및 손해부담

- ① 신청인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자, 수수료, 지연배상금, 우편료, 전신료,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,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 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합니다. 다만,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.
- ② 은행은 제1항의 이자, 수수료, 지연배상금, 우편료, 전신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.
- ③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간접손해, 예상수익, 기타 특별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 8 조 준용규정

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, 국제상업회의소의 [추심에 관한 통일규칙],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, 전자금융거래관련 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9 조 약관의 변경

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. 다만 약관 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